

- ① (1장: 총칙) 목적, 용어 정의, RFI 자격요건*, 적용범위 등
- * 업종: 외국에서 은행업 또는 증권업(투자매매·중개업) 인가받은 기관으로 한정
재무건전성: 바젤Ⅲ 등 글로벌 수준의 재무건전성을 충족한다고 한은총재가 인정
- ② (2장: 등록) 등록절차 및 당국의 확인·재점검 및 제재 근거
- (요건) 시행령에서 위임한 신용공여(credit line) 요건 구체화*
 - * 기재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들 중 선도은행 4개 포함 15개 이상 기관과 약정 체결
 - (절차) 등록시 필요 서류*, 변경·폐지 신고, 당국의 확인 및 추가 서류 제출 요구, 적정성 재검토 및 보완명령 등 명시
 - * 예) 연차보고서,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명세, 본국법령 비저축 확인서류 등
 - (취소) RFI 본점이 합병·휴업·폐업하거나, 현지법령 위반으로 금융당국에 징계를 받는 경우 등에 대한 취소 근거 마련
- ③ (3장: 업무) 업무대상·범위, 업무용 계좌 결제절차 등 명시
- (대상) 은행간시장 참여자(다른 RFI 포함), 비거주자인 고객
 - (범위) 현물환, FX 스왑 거래
 - (결제) 업무용 외화계좌는 국내·외 관계없이 개설 가능하나, 업무용 원화계좌는 반드시 국내에 개설하여 자금결제에 활용
- ④ (4장: 의무) 업무상 의무, 의무위탁, RFI에 대한 특례 규정
- (의무) 대고객 거래시 적법성 확인 및 영업 현황 보고의무, 은행간시장 거래시 외국환중개회사 경유 의무 부과
 - (위탁) RFI가 의무 수행을 위탁할 '대행기관' 지정 절차 규정
 - (특례) 동일그룹 외은지점(예: JP서울-JP런던) 또는 선도은행 등으로 부터의 원화차입 및 외국환중개회사 未경유 직거래 허용
- ⑤ (5장: 건전성 관리) RFI 및 국내은행의 對RFI 선물환포지션 비율을 함께 모니터링하기 위한 한도 관리 방안 규정
- ⑥ (6장: 감독 등) 한국은행에 위탁한 RFI 업무감독에 대한 근거 마련 등